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행정처분(경고)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9. 8.

파 주 시



- 1. 제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경고) 통지 공시송달 공고
- 2. 근거법규
 - 가.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제60조
 - 나.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- 3. 공고기간 : 2026. 9. 8. ~ 2026. 9. 23.(초일 미산입, 15일간)
- 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
- 5. 공고대상

사업장	소재지	위반사항	처분내용
보**경 주식회사	파주시 적성면 덕**리길 2*7-1*	변경신고 미이행 [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]	경고

- 6. 공시송달내용
 - 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7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(경고)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,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 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나.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7. 문의사항 : 파주시 자원순환과 (전화 031-940-2485, FAX 031-940-4739)